

商品分類 NICE分類로 轉換검토

特許廳은 국내 商品分類체계를 국제 기준인 NICE分類체계로 전환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商標法시행규칙에 규정된 商品의 類·群·細分類를 NICE分類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特許廳은 지난해 韓國生産性本部에 용역을 주어 최근 「NICE分類 轉換에 관한 研究」를 發刊했다.

이 글은 이 研究의 일부를 발췌·게재한 것이다.

〈編輯者 註〉

I. 研究概要

1. 研究目的 및 必要性

최근 科學技術의 눈부신 발전으로 새로운 商品이 새로운 用途로 급격히 出現되고 있어, 商品의 內容과 用途가 복합적이고 多樣化되는 추세에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化, 開放化가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國內企業의 外國에의 商標出願이 크게 增加되고 있으며, 外國企業의 國內出願도 급격히 增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商標分類體系는 우선 商品細目面에서 매우 단순하게 設定되어 있고, 外國分類와 크게 다른 構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國內外出願人에게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外國과의 通商摩擦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

NICE分類는 1957年6月 프랑스의 NICE에서 商品과 서비스에 대한 國際契約으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 '89년 현재까지 프랑스, 영국, 미국을 비롯한 33개국에 가입하고 있으며, 미가입국중 70여개국에 NICE分類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商標에 대한 NICE分類를 채택, 즉 分類基準을 國際的인 基準에 맞추므로써 國內外 出願人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나라 商標制度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다.

本 研究는 이러한 必要性에 따라 현행 商標분류체계와 NICE 體系의 차이점을 면밀히 檢討하여 分類體系의 變動에 따른 問題點을 소화 하는 分類體系(類似群)를 設定하고 NICE分類 導入에 따라 예상되는 問題點을 分析, 해결 방안을 提示코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對象 및 範圍

本 研究는 NICE分類 導入에 따른 基礎作業과 이에 따른 電算檢索 프로그램을 設定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整理하면 本作業은 다음 세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NICE分類上의 商品 및 서비스 細目(商品 8,800여개, 서비스 700여개)을 各 NICE 類 內에서 類似商品群을 設定하고, 各 類似商品群에 대해서 群別 注解書를 作成하여 現行分類體系와 어떻게 다른가를 商品 細目別로 比較(類別, 群別, 商品 細目別)하는 것이다.

둘째, '85年1月부터 '89年6月까지 登錄된

商標에 대해 電算에 入力된 데이터를 登録原簿와 対조하여 수정·입력하는 것이다.

셋째, 現行分類가 NICE分類로 轉換됨에 따라 現在 檢索되고 있는 水準에서 NICE分類 基準으로도 檢索이 可能토록 프로그램을 作成하는 것이다.

3. 研究期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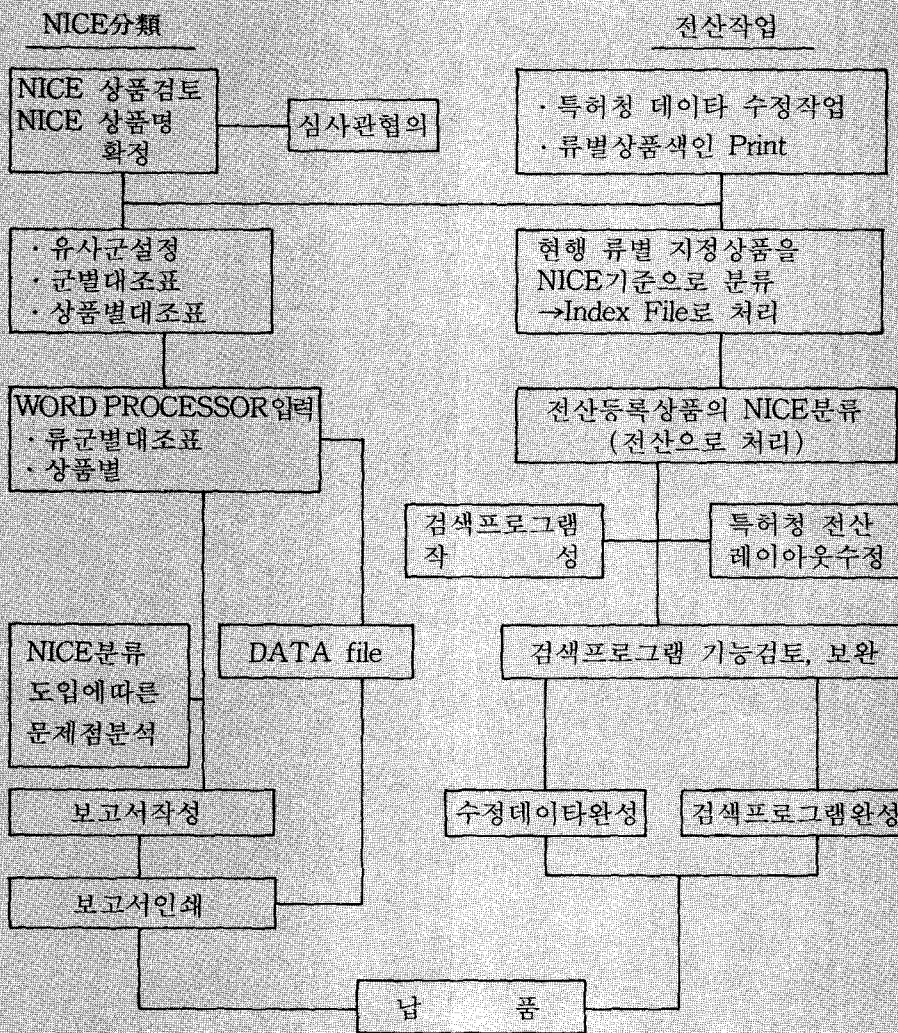
1989年 4月 1日~1989年 12月 30日

4. 作業 프로세스와 作業上的 特徵

本 作業은 크게 두가지 部分으로 區分될 수 있다. 즉 NICE 商品의 群分類 作業과 NICE分類 施行에 따른 電算檢索 프로그램의 作成이다.

우선 NICE分類 作業은 NICE商品에 대한 既 翻譯內容을 검토하고 특허청 심사관과 변리사 협회의 자문을 통해 商品명을 確定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商品은 用途가 包括

〈圖 1〉 作業프로세스



적인 것도 있고, 用途나 材質이 不分明한 것도 있었다. 前者 즉 用途가 包括적인 商品은 主用途에 따라 類似群을 設定하고, 後者 즉 用途나 材質이 不分明한 것은 商品學辭典 또는 分野別 專門書籍을 참고하여 商品群을 設定하였다. 이러한 商品은 別途로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이들 상품들은 추후 보완 작업시 명확한 商品定義가 있는 후에 類似群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

NICE分類는 商品細目(商品 8,800여개, 서비스 700여개)이 많고, 類 및 群別 그리고 全體 商品에 대한 가나다 또는 알파벳 리스트가 중요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기 때문에 Word processer에 入力하여 한글, 영문, 類·群別로 自動分類(Sort)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추후에 부분적인 補完이 있을 때에도 電算으로 容易하게 修正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산 부분에서는 크게 3가지 部門의 作業이 進행되었다.

첫번째는 '84년 이전에 등록된 자료를 特許廳이 이미 수정한바 있기 때문에 '85년1월부터 '89년 6月分까지 등록된 상표에 대해 등록원부를 대조하여 DATA를 수정하고, 이 수정된 DATA중 指定商品(約 250萬件)을 NICE基準으로서도 檢索可能토록 하는 것이다.

電算登錄 指定商品을 일일이 NICE分類로 指定해 주는 것은 불가능 하고, 만일 NICE類 指定이 잘못된 경우 修正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別途의 指定商品 File을 設定(MIDAS)하여 이것으로 先登錄 指定商品의 類를 查得토록 하는 方法을 강구 하였다.

즉 先登錄 指定商品을 重複없이 가나다 順으로 뽑아서 (約 9萬件)이것을 NICE基準으로 類를 分類하여 File을 設定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후일 새로운 商品(9萬件 以外)이 登錄되면 MIDAS File에 새로운 商品과 NICE類를 入力하여 檢索이 可能토록 하고 특수한 商品에 對해 現行類와 NICE

類를 확인하는 데에도 有用한 資料로 利用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이러한 NIDAS File을 設定하는 데는 先登錄 指定商品에 몇가지 問題가 있어, 이것도 추후 보완해야 할 必要가 있다. 첫째는 電算 人力上의 애라로서 現行 分類가 잘못 指定되어 入力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등록 원부와 대조 및 등록 원부가 잘못된 경우는 원부를 수정)할 必要가 있으며 그다음에는 특정 商品명이 20글자를 초과하는 경우 이 商品의 연결고리를 設定하여 동일한 NICE類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작업에서는 商品명이 20글자(이하 複합 商品이라 함)를 초과하는 것에 對해서는 電算으로 일일이 체크하여 등록 사항을 프린트하여 複합商品의 연결 상태를 조사한 후 NICE類를 入力하여 別途의 File을 設定하였다.

따라서 檢索프로그램상 指定商品(또는 出願 件別)의 NICE類를 檢査할때는 論理的으로는 複합商品이 있는 File를 檢査한 후 단독 商品의 NICE類를 檢査하여 화면에 Display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또 한가지 問題점은 現行分類 基準上의 特定 指定商品은 NICE分類상으로는 몇개類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별商品이 現行類와 NICE類가 1:1 對應이 되는 것이 아니고 特定商品의 경우 몇개의 NICE類로 나타난다는 것을 意味한다.

물론 이러한 兩面的인 병존현상(現行類와 NICE類)은 NICE類 轉換이 施行된 후 갱신이 完了되는 時點(施行後 10년)에서는 自然的으로 NICE類로만 Display된다.

本 作業의 마지막 단계(第IV章)에서는 NICE分類 導入에 따른 諸般 問題點이 整理된다.

II. 研究 分類體系와 NICE 分類體系의 比較

1. 現行分類와 NICE분類의 比較

(1) 總括比較

NICE분類와 現行 한국분류상에 가장 큰 차이점은 現行 분류 기준으로 볼 때 類의 數가 크게 줄어든다는데 있다. 즉 商品의 경우 現行분류가 53개류에서 NICE의 경우 34개류로 되며, 서비스의 경우는 12개류에서 8개류로 축소된다.

또한 現行분류 체계는 266개 群으로 設定되어 있는데 NICE의 경우 群의 概念이 없이 단지 그 나라의 實情에 맞게 群을 設定(群의 概念이 없이 類의 狀態로만 活用하고 있는 國家도 있음)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작업 결과 NICE基準으로 群의 數는 商品의 경우가 266개 群에서 500개 群으로 늘어 났으며, 서비스의 경우는 세부명칭없이 류로만 設定되어 있었으나 35개 群으로 새로 이 서비스 群을 設定하였다.

商品 細目面에서는 現行基準이 2,800여개 상품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NICE의 경우는 8,800여개 상품으로 商品細目이 細分化되어 있다.

<表 2> 現行분류와 NICE분류의 比較

분류 구분	現行분류	NICE 분류
商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개류 · 266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류 · 군은 각국에서 설정 (500개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00여개 상품 12개류 (세부업종을 명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00여개 상품 8개류 700여개 (35개군)

(2) 分類基準 比較

現行 商品의 分類는 生産, 販賣, 用途面에서 類似한 商品을 모아서 이들을 하나의 類로 設定하고 있는 반면, NICE의 경우에는 加工段階나 機能, 用途가 重視된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NICE분類는 어떤 획일된 기준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6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완제품의 경우는 주로 機能과 用途에 따라 분류되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알파벳순의 리스트에서 다른 유사 완제품의 류를 보고 유추해서 분류한다. 만일 이러한 유추도 어려울 경우에는 完製品을 構成하고 있는 原料나 製造工程과 같은 補助的인 基準이 活用될 수 있다.

둘째, 多用途로 構成된 完製品(예를들면, 라디오가 附着된 時計)의 경우 그 주된 用途나 機能을 보아 分類하며 이러한 基準이 예시된 商品內에 없을 때는 첫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分類한다.

셋째, 未加工 또는 半加工 原材料의 경우 주로 構成하고 있는 原材料에 따라 分類한다.

넷째, 特定製品의 部品으로 사용되는 경우 他目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當該 完製品과 동일한 類로 分類된다. 그외의 경우에는 첫번째의 基準이 適用된다.

다섯째, 여러가지 原材料로 構成된 完製品 또는 半製品은 이를 構成하고 있는 주된 原材料로 分類된다.

여섯째, 製品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포장 용기는 주로 當該製品과 동일하게 분류된다.

NICE분類의 이러한 基準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분류기준으로 이용되는 우리나라와 生活習慣이 다른 歐美式 用途나 機能이 重視되고 있기 때문에 現行商品 細目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現行分類 基準과 NICE基準과의 差異를 몇가지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原材料와 用途가 重視되고 있는 例로써 「상자」는 現行 25류3군에 있는데, 이것이 「금속제」상자 이면 NICE6류, 「가죽제」상자 이면 18류, 비금속제 주방용 상자이면 21류, 「귀금속제」상자이면 14류, 「기타 비금속」제 상자이면 20류로 분류된다.

두번째는 機能이 重視되고 있는 例로서 용접기를 보면 「非電氣式」용접 기구는 8류, 「電氣式」용접기구는 9류 그리고 自動鎔接器

具는 7류로 분류되고 있다.

세번째는 狀態가 重視되는 例로써 食物을 예로 들 수 있다. 現行分類에서는 農産物과 그 加工品, 畜産物과 그 加工品, 水産物과 그 加工品이 각각 2류, 7류, 8류로 되어 있지만, NICE分類에서는 이들 農畜産物중 살아있는 것과 싱싱한 것 및 미가공상태의 것이 주로 NICE 31류에 속하며 건조하거나 소금에 절인 상태의 것은 주로 29류, 그리고 食品狀態에 것은 30류에 속한다.

네번째는 生活慣習의 差異이다. 예를 들면 맥주의 경우 現行 分類上에서는 酒類(현행 6류)에 속해 있지만, NICE分類에서는 32류인 釐량음료류에 포함되어 있다.

2. NICE分類의 類似商品群 設定基準

나라에 따라서 商標關聯法規의 施行과 이에 따른 出願, 登錄, 審査에 있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나 미국 등에서는 商標의 出願과 登錄에 있어 지정상품의 範圍를 群의 概念없이 類單位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과거 商標法 施行 初期부터 商標權의 範圍에 있어 指定商品의 類·群 概念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現행분류 기준에서 NICE分類 基準으로 轉換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商標關聯法의 施行, 使用慣習을 고려할 때 群單位의 細分化된 分類의 必要性은 재론할 여지가 없으며, 단지 중요한 것은 分類基準의 變動에 따른 혼란을 極小化하면서 長期的으로 우리나라 商標關聯制度가 發展할 수 있는 分類體系를 設定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NICE類 下에서 類似商品群을 設定하되, 指定商品의 範圍 變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극소화하기 위해 現行群分類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現행 特定群의 指定商品이 NICE類, 群으로 分類될 때는 동일상품이 금속제인가 비금속제인가에 따라 류는 다르더라도

류내에서는 現행 유사상품군은 가능한 하나의 類似商品群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現재의 特定群이 類別로는 分解되어 가지만, 同一郡(NICE 기준)內에서는 여러 개의 現行群을 모아서 하나의 群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한 억제하였다. 이것은 同一群內에서 同一한 商標가 存在함으로써 발생하는 權利問題를 極小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歐美式 NICE분류체계를 우리 實情에 맞게 通用한다는 점에서도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類似商品의 範圍는 비교적 넓게 설정하였다. 이미 언급한바 있지만 NICE分類體系는 特定商品에 대해 金屬과 非金屬 또는 工業用과 食用, 의료용과 비의료용 등 材質과 用途의 차이에 따라 類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類似商品의 範圍를 좁게 잡을 경우 무수히 많은 상품군이 생겨 나기 때문에 現재의 類似群 體系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사군을 넓게 설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의 作業 結果를 볼 때 類似群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設定한 결과 무수히 많은 商品群이 있게 되어 施行上의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극히 部分的인 경우가 있지만 現행분류 체계상 類似商品의 範圍가 一定한 것이 아니고 어떤 群은 비교적 넓게 설정되어 있고, 어떤 것은 좁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유사상품군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의 범위를 확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영문해석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유사상품군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NICE 21류 9군은 非金屬製 통류로써 英文에서는 casks, vats, barrels, bins, boxes, Chests, containers가 用途에 따라 혼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群으로 하였다. 現행분류상에서는 통류는 25류 2군이며 상자는 25류 3군인데 이 경우 불가피하게 두개의

현행 群의 하나의 NICE群으로 설정된 예이다.

또다른 예를 보면 국기(현행 18류9군)와 우승기(18류10군)는 우리나라 상품기준으로 볼때는 區別되는 것이지만 現行 類似 商品群의 範圍로 볼때는 지나치게 축소된 例라고 볼 수 있다. NICE의 경우는 24류 10군 旗類(종이製가 아닌)에는 banners, flags등이 있는데, 이 경우도 영문만으로 볼 때 국기와 우승기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同一群으로 하였다.

셋째, 포괄상품의 명칭과 多用途商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된 用途를 파악하여

분류하고 상품명 후미에 **표시를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NICE의 特定商品은 동일상품이 同一類內에 2개군으로 중복해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screw propellers는 선박용과 항공기용으로 使用될 수 있는 선박용인 경우는 NICE 12류2군이 며, 항공기용인 경우는 12류3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분류기준에서 實際 分類作業은 研究팀에서 1次 分類作業을 完了하여, 商標出願과 심사에 경험이 많은 심사관과 변리사협회의 諮問을 통해 최종적으로 確定하였다. <♣>

「特許·實用新案出願公開 및 公告索引集」발간

1. 우리協會는 特許情報 檢索의 效率性 提高를 위하여 既 發刊 索引集에 이어서 '88年度分 特許·實用新案 出願公開 및 公告索引集을 각각 IPC別 및 出願人別로 區分하여 다음과 같이 發刊하였습니다.

■ 다 음 ■

1. 製作內容

區 分	公告索引集	公開索引集
體 制	菊倍版(11절)	菊倍版(11절)
面 數	260面(合本)	1,280面(卷當 640面)
索引의 種類	IPC別, 出願人別(合本)	IPC別, 出願人別(分冊)
1面當收錄件數	約60件	約60件
總收錄件數	7,262件	38,023件

2. 發行日: 9月1日

3. 價格

區 分	公告索引集('88年度)	公開索引集('88年度)
會 員	20,000원	75,000원
非 會 員	25,000원	85,000원

4. 問議處: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查資料部(555-6892)

(138-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중앙중요빌딩7층)